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경연대회 참여에 관한 지원기준

제정 2011.11.17.

개정 2017.09.06.

개정 2018.05.02.

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와 그 밖의 국제경연대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서울대 대표팀으로 참여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참여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1. 서울대 대표팀의 자격 등

지원을 받는 “서울대 대표팀” 소속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동 대학원 소속 지도교수가 정하는 선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된 팀 구성원이어야 함.

지도교수는 “서울대 대표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할 때까지 책임지고 서울대 대표팀을 지도하여야 함.

“서울대 대표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 대표가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활동계획 및 대회 참가 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대회 참가 이후 서울대 대표팀 구성원 대표는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를 대학원 학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서울대 대표팀으로 인정받는 경우 학교는 위 국제경연대회의 왕복항공료와 등록비를 지원함(국제대회 등록비만 지원하고 국내예선의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음)

2. 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

행사지(통상 미국 워싱턴 DC)까지 4인(실제 참가자가 그 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 참가자) 기준 왕복항공료와 등록비를 지원함. 단, 학교 외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그 외부지원 액수와 학교의 지원액수를 합한 총액이 왕복항공료와 등록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지도교수가 동행할 경우 지도교수의 왕복항공료를 지원함.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왕복항공료는 economy class의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의 국제경연대회

국내대회 4장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만 지원함.

행사지까지 4인(실제참가자가 그 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 참가자) 기준 왕복항공료와 등록비를 지원함. 단, 국내대회를 통해 상금을 받거나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상금 및 외부지원 액수와 학교의 지원액수를 합한 총액이 왕복항공료와 등록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든 학교의 지원액은 같은 해의 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같은 해에 국제경연대회(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 제외) 참가팀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안분 비례하여 지원함.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왕복항공료는 economy class의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함.

4. 기타

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와 그 밖의 국제경연대회 참여와 관련된 지원신청은 해당 국제경연대회 개최 직전연도 11월에 마감함.

부칙 <2011.11.1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